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582호

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고 보고토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의 일부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한 「건축물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67호, 2023.4.18. 시행)됨에 따라, 위임 근거조항 수정 등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위임 근거 조항 수정(안 제20조)

개정 전 법률(제18934호, 2022.6.10.) 제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0조

제1항을 개정 법률 제19367호(2023.4.18. 시행)의 제29조의2를 위임 근거로 수정하고, 법률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영 제20조제2항은 삭제함

나.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대행 위임 근거 조항 수정(안 제29조)

개정 전 법률(제18934호, 2022.6.10.) 제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9조 제4항제2호를 개정 법률 제19367호(2023.4.18. 시행)의 제29조의2를 위임 근거로 수정함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건축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428호

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

○ 전화(☎) 044-201-4989, 4986 / 팩스 044-201-5575